#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1

발의연월일: 2024. 3. 6.

발의의원: 이진환, 조성대, 박경원,

김동훈, 이정애, 김상수, 박윤옥, 한근수, 손정자,

전혜연, 이수련, 김지훈(민)

#### 1. 제안 이유

공동주택(500세대 이하 포함) 월패드 해킹 및 사생활 침해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'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[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]'에 기재된 공인시험기관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인·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3조)

나. 홈네트워크 안정·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4조)

다.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·유지·관리 기준과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(안 제5조, 제6조)

3. 제정 **조례안**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**관련 법령** : 덧붙임

##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 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 서비스를 사생활이 보호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홈네트워크 설비"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, 홈네트워크장비,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.
- 2. "홈네트워크망"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
가. 단지망: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

나. 세대망 : 전유부분(각 세대 내)을 연결하는 망

3. "홈네트워크장비"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
가. 홈게이트웨이 :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

-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
- 나. 세대단말기 :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
- 다. 단지네트워크장비: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써, 백본(back-bone), 방화벽(Fire Wall),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
- 라. 단지서버 :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,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·관리·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
- 4. "홈네트워크사용기기"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 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.
  - 가. 원격제어기기 :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, 조명, 전기, 난 방,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
  - 나. 원격검침시스템: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, 가스, 난방, 온 수.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
  - 다. 감지기 : 화재, 가스누설,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 하는데 필요한 기기
  - 라. 전자출입시스템: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

- 마. 차량출입시스템 :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
- 바. 무인택배시스템 : 물품배송자와 입주자 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,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
- 사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,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
- ② 공동주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에 적용되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등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홈네트워크설비, 홈네트워크망,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·유지·관리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) 홈네트워크 설비, 홈네트워 크망,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설치·유지·관리 등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인터 넷진흥원(KISA)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의 공인시험기관(보안기능시험제도)에서 시험하여 안정성을 확인받은 제품(안정성 검증필 제품)의 사용 등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

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을 따른다.

제6조(설치기준 등의 권고) 시장은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에 따라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따라 안 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 나. 재정 수반 요인
  - 해당사항 없음

#### 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.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항임.

-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 기준과 안정성·보안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.

### 4. 작성자

도시국 주택과 안진호

## 붙 임 관 련 법 령

### O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2조의2(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)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(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 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# ㅇ 「주택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3. "부대시설"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.
  - 가. 주차장, 관리사무소,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
  - 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
- 다. 가목 및 나목의 시설·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
- ㅇ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주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주택건설기준"이라 한다)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(이하 "홈네트워크"라 한다)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홈네트워크 설비"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, 홈네트 워크장비,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.
- 2. "홈네트워크망"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- 가. 단지망 :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
- 나. 세대망 : 전유부분(각 세대내)을 연결하는 망
- 3. "홈네트워크장비"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- 가. 홈게이트웨이: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 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

- 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
- 나. 세대단말기 :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 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
- 다. 단지네트워크장비: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, 백본(back-bone), 방화벽(Fire Wall),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
- 라. 단지서버 :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,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
- 4. "홈네트워크사용기기"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 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.
- 가. 원격제어기기: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, 조명, 전기 및 난방,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
- 나. 원격검침시스템 :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, 가스, 난방, 온수,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
- 다. 감지기: 화재, 가스누설,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
- 라. 전자출입시스템 :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
- 마. 차량출입시스템 :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
- 바. 무인택배시스템 :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,

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

- 사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,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
- 5. "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"이란 홈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곳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- 가. 세대단자함: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,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·접속하기 위하여이용자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
- 나. 통신배관실(TPS실):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
- 다. 집중구내통신실(MDF실) : 국선·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,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
- 라. 그 밖에 방재실, 단지서버실,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

제4조(홈네트워크 필수설비)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- 1. 홈네트워크망
- 가. 단지망
- 나. 세대망

- 2. 홈네트워크장비
- 가. 홈게이트웨이(단,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)
- 나. 세대단말기
- 다. 단지네트워크장비
- 라. 단지서버(제9조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)
-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, 정전 시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(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)는 제외한다.

#### 제2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

제5조(홈네트워크망) 홈네트워크망의 배관·배선 등은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「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- 제6조(홈게이트웨이)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② 홈게이트웨이는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하며,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제7조(세대단말기) 세대내의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과 단지서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기기를

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8조(단지네트워크장비) ①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단지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(rack)으로 설치하며,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단지서버) ①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- ②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단지서버는 상온 · 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목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가. 정보통신 보안 문제

- 나. 통신망 이상발생에 따른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운영 불안정 문제 제10조(홈네트워크사용기기)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1.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,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.
- 2.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 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#### 3. 감지기

- 가.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, LPG인 경우에는 바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.
- 4. 전자출입시스템
- 가.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 치하여야 한다.
- 나. 화재발생 등 비상시,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 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다.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(날개벽, 차양등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5. 차량출입시스템
- 가.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·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.
- 6. 무인택배시스템
- 가.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·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(SMS)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나.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~15%,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~20%로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- 7. 영상정보처리기기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제11조(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) 홈네트워크 설비가 다음 공간에 설치 될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1. 세대단자함
- 가. 「접지설비・구내통신설비・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

술기준 제3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- 나.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 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세대단자함은 500mm×400mm×80mm(깊이)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
#### 2. 통신배관실

- 가.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 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나.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(tray) 또는 배관,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다.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.7미터, 높이 1.8미터 이상(문틀의 내측 치수)이어야 하며, 잠금장치를 설치하고,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라.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, 물 등이 들어오지 않 도록 5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3. 집중구내통신실

- 가. 집중구내통신실은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19 조에 따라 설치하되,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 신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나.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

치하여야 한다.

다.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화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및 홈네트워크 보안 제12조(연동 및 호환성 등) ① 홈게이트웨이는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.

-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,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하며,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제13조(기기인증 등) ①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을 우선 적용하며,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.
  - 제14조(유지·관리 등) ①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·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하자담보기간과 내구연한을 표기할 수 있다.
-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%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,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. 제14조의2(홈네트워크 보안) ①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,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,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, 가상근거리통신망,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 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행정사항

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248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